인권정보자료실
SAf1.14.2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3.

의견서, 기자회견문, 성명, 보도자료

<목 차>

1) <의견서> 이계수,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2003. 9. 22 내부 토론용)
2) <의견서> 장주영, 테러방지법안 검토 의견(2003. 9. 22 내부 토론용)
3) <기자회견문> (2003. 9. 30)
4) <공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및 의견 표명 요청서
5)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환영한다. (2003. 10. 24)
7) <공문>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관련, 국회 정보위에 보내는 공문(2003. 10. 30)
8) <공문>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국회 정보위 차원의 답신(2003. 10. 30)
9) <보도자료> 테러방지법안 국회 공청회(2003. 11. 3)
10)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 부쳐 (2003. 11. 4)
11)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 - 3당 연합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제출에 대해
12) <성명>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3당 연합 수정안 제출에 부쳐
13)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 시민, 사회단체의 성명 및 언론의 기고 모음(2003. 10. 31~11. 13)
14) <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1. 14)
15) <의견서>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한다" - 법안의 문제점 요약문 (11. 17)
16) <성명>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당론 결정에 분노한다!
즉각 테러방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11. 17)
17) <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의원 찬반 질의서
18)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11. 19)
19)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11. 19)
①경과 ②성명 ③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④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견
20) <성명>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11. 19)
21) <성명>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반인권 의원 선포문(11. 20)
22)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대회 (11. 20)
23) <성명>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 거는가? -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인권정보자료실
SAf1.14.2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3.

의견서, 기자회견문, 성명, 보도자료

<목 차>

1) <의견서> 이계수,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2003. 9. 22 내부 토론용)
2) <의견서> 장주영, 테러방지법안 검토 의견(2003. 9. 22 내부 토론용)
3) <기자회견문> (2003. 9. 30)
4) <공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및 의견 표명 요청서
5)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6)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환영한다. (2003. 10. 24)
7) <공문>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관련, 국회 정보위에 보내는 공문(2003. 10. 30)
8) <공문>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국회 정보위 차원의 답신(2003. 10. 30)
9) <보도자료> 테러방지법안 국회 공청회(2003. 11. 3)
10)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 부쳐 (2003. 11. 4)
11)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 - 3당 연합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제출에 대해
12) <성명>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3당 연합 수정안 제출에 부쳐
13)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 시민, 사회단체의 성명 및 언론의 기고 모음(2003. 10. 31~11. 13)
14) <성명>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1. 14)
15) <의견서> "테러방지법안 입법에 반대한다" - 법안의 문제점 요약문 (11. 17)
16) <성명>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당론 결정에 분노한다!
즉각 테러방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11. 17)
17) <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의원 찬반 질의서
18)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11. 19)
19)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11. 19)
①경과 ②성명 ③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④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견
20) <성명>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11. 19)
21) <성명>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이른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반인권 의원 선포문(11. 20)
22) <보도자료> 국회 정보위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에 대한 반인권 의원 선포대회 (11. 20)
23) <성명>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 거는가? -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11. 25)
24) <보도자료>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및 파병 결정 철회 촉구 집회 (12. 4)
25) <성명> 폭력의 악순환 몰고 올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12. 4)
26)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 한국인 노동자 피격 사건 이후 제시된 정부 테러대책에 대한 비판 (12. 9)
27) <특별결의문> 민가협 목요집회 500회 : 테러방지법 제정, 절대 반대한다!
28) <의견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심사안에 대한 의견 (12. 11)

2003년 9월 22일 간담회부터 12월 11일까지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 기자회견문, 의견서, 보도자료 등이다. 이 중 1) 2) 5) 15) 19) 26) 28) 등을 통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 법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울산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원

2003. 9. 22. 배포용

Ⅰ. 9·11 테러 이후 2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1. 시민의 자유(특히 정보기본권) 약화, 정보기관 권력의 강화

1. 각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당국에게 9·11은 정보권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코드'로 기능한다. 각국 정보당국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틈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약화시키고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 법률들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이른바 국내안보(Homeland Security)를 담당하는 기관들(비밀정보기관을 포함)의 권한을 확대한다.

② 모든 국민의 신분증에는 각자의 생물학적 정보(예를 들어 지문날인, 손도장 혹은 얼굴사진, 눈의 홍채)를 내장한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위험분자로 보고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을 照會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③ 원거리통신(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인터넷)에 대한 감시가 확대된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게 핸드폰의 현재 소재지 및 핸드폰번호를 조사할 기술적 장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침해가 이루어졌다.[1)]

④ 은행, 우체국, 통신회사 및 항공사는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그들 고객의 계좌 및 자금입출금내역 혹은 접촉, 접속 및 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정보기관의 안전점검권한이 강화된다.

⑥ 정보기관과 경찰간의 정보교환이 강화된다. 정보기관, 외국인관청 및 외국인등록처간의 정보연합(online 교류)이 설립된다.

⑦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강제출국의 요건이 약화된다.

⑧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감시를 쉽게 하기 위해 단체법에서 종교상의 특권을 폐지했다.

⑨ 반테러조치를 외국조직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

1)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이 최근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통신에 대한 감시, 형사소추기관의 수색·압수권한의 강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약화, 정부기관간 정보의 상호유통 및 교환의 강화, 개인식별절차의 구축을 의도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 한국에 관한 정보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출처: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phr2003/countries/southkorea.htm 참고). 위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나, 테러공격이 그러한 입법들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도 틀림없다고 한다. 만약 9·11 테러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입법은 쉽사리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⑩ 국내안보를 담당하는 보안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과 정보기구 및 군대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리하면 각국의 보수 공안세력들은 '9·11'을 자신들의 권한강화계기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 국제협력이란 다름 아닌 미국의 압력이라고 보면 된다. **즉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제협력은 결코 UN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UN 안보리는 9·11 테러 직후의 결의안 1368호 등을 통해 반테러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등)에 각국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고, 테러자금의 차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했지, 시민의 자유권을 대폭 제한하는 '반테러법' 체제를 구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안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연대'의 일환으로 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미국은 9.11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왔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 지문 등 이른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다.[2)]

유럽연합에 대해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기준(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위반된다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사례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기관간 국제적 협력은 강화되었다. 미국은 9·11 이후 유럽연합(EU)과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검색과 감시권한을 확대하였다.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유럽경찰과 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구속영장제도 도입, 경찰 정보교환의 확대, 보다 간편해진 유럽연합 내 범죄자 인도제도, 미국의 에셜론(Eschelon)에 대응하는 이른바 '엔포폴(Enfopol)과 같은 광범위 감시망체계의 구축, 유럽경찰인 'Europol'의 권한확대(테러범죄수사권 확대, 반테러 특별부대의 보유) 등. 정보기관간 국제협력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회통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리하면 '9·11'이후 각국에서의 반테러조치와 법제의 강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테러 국제연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파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그러나 9·11 테러이후 미국이 주창한 반테러 국제연대에 대해 촬머스 존슨은 이미 2001년 말에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을 지원하는 듯하지만 이른바 반테러 국제연대는 가짜다." 그의 지적은 옳았다. 견고해 보였던 반테러연대는 유럽국가들의 비판을 필두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수행한**

2) 참고기사: Under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EU states agreed, at the end of June, to begin adding biometric data to national passports from next year. The United States had threatened to introduce mandatory visas for all EU citizens if the EU did not include such identifiers in its passports. An agreement was also made, earlier this year, by the G8 nations (Canada, France, Germany, Japan, Italy,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biometric passport system, with barcodes, iris scans and fingerprints. 출처. http://www.irr.org.uk/2003/july/ak000007.html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대한 세계시민사회의 비판은 매우 거세다.

2. 나아가 반테러법에 대한 국내적 저항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9·11 직후 유례없는 속도로 이른바 'Patriot법'이 제정될 때만해도 사실상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미국사회에서도 최근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연맹(ACLU)은 최근 미국을 감시국가(America, Land of Watched)라고 명명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탑승객감시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CAPPS II))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2003년 1월 현재, '국내안전강화법안 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3'을 비밀리에 입안해 놓았고 곧 의회에 제출할 태세이다. 위 법안은 이른바 'Patriot II'로 불리고 있으며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예방전쟁'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조기에 '적'을 식별하고 그 적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테러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것이 부시정부 내 강경파들의 입장이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부시정부 방식의 테러방지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판은 미 국방부의 감시프로젝트인 TIA와 위의 'Patriot II'의 공개로 인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급기야 법무장관 애쉬크로프트가 2003년 8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시정부의 테러방지법제를 선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州를 포함하여 160개의 카운티, 市, 주가 이미 Patriot법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을 '시민 자유권 안전지역 Civil Liberties Safe Zone'으로 선언했다고 한다.

한편 영국정부는 최근 무기박람회(arms fair)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에게 반테러법(Anti-Terrorist Law)을 적용하여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3. 물론 이러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국면'을 이용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예를 들어보자.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 3월에야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을 改惡하려는 案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provisions of any other law,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다른 법률이 이 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치려 한다.

>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provisions of any other law,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ational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다른 법률이 이 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개정은 비밀정보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비밀정보기관의 의도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인의 통신비밀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통신내역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유무선 통신회사의 데이터뱅크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각국에서는 자국 정부의 반테러법과 현재와 같은 물리력 일변도의 테러방지대책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대결의 결론은 각국 국민들이 테러의 실체, 반테러법제가 초래하는 자유의 축소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테러란 무엇인가? 한국은 테러위험지역인가?

각국이 제정하였거나 제정하려고 하는 반테러법 혹은 테러방지법은 테러문제(이 문제가 왜 발행했으며, 또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생략)에 대해 강제력, 물리력이라는 '의심스러운 수단'만으로 대처하려는 시각을 반영하는 입법이다. 그러한 대처가 가져올 시민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실제로 미국 등지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과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을 만큼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효과적'인가? 힘으로 국제법 질서도 유린하는 미국식 방식에 반대하는 테러가 이스라엘, 이라크 등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별 효과가 없음을 입증한다.

왜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테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자세한 설명은 생략).

테러는 크게 국내테러(지역적 테러)와 국제테러(혹은 전지구적 테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이 그 독립을 위해 스페인 내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전자라면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는 후자에 예에 속한다. 그런데 후자의 테러는 1970년대이래 원래 이스라엘 내에서만 행해지다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一極지배체제하에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반발로 전지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목적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이 전세계적으로 관철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테러가 유일한 저항방법이라고 본다.

한국은 스페인처럼 국내에 지역적 테러조직이 존재하는 국가인가? 이슬람테러세력이 주된 목표로 삼는 나라인가? 테러에 대한 대책과 법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을' 테러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3]

2001년 말에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한시 바삐 제정해야 2002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없이도 우리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응원하는 가운데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위협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II. 우리는 왜 여전히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가?

이번에 국정원과 민주당 합작으로 내놓은 법안은 최초의 법안(2001년 12월)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제거하였다. 표현하자면 이전 법안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다듬고, 순화시켰으며, 테러방지조치의 수립과 시행이 "반테러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틀 내에서 기획된 것임을 강조하려고 한다.[4] 그

3) 예컨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 테러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4) 물론 미국이 테러대응조치의 강화방안으로 한국에 현재와 같은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라고까지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9·11 이후의 정세를 이용하면서도 국정원 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러나 그렇게 바꾸었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의 본질까지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이번 제2차 테러방지법안은 제1차 법안과 달리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하여 제1차 법안과 달리 법치주의적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조항들을 대폭 제거하였다.

물론 의문스러운 조항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이전 법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은 이번 법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동 법안 제8조는 제1항에서 "대테러 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 예컨대 사실관계확인조치에는 수사권한도 포함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번 법안에 포함된 유일한 처벌조항인 제13조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동조는 제1차 법안에서와 달리 "허위임을 알면서도"라는 부분을 집어넣어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진실'과 관련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자칫 "허위임을 알면서도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내에서는 9·11 테러의 진실과 관련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민단체들이 모여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한 비판과 대응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을 뿐, 제기된 의문에 대한 공식적·객관적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미국 정부이니 만치, 9·11 테러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때 누군가가 미국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다면 그것은 허위신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누군가가 "9·11 테러는 허구다"라고 주장한다면 국정원은 이 조항에 의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를 찾아내어 수사할 권한을 갖게되는가? 이러한 조항이 자칫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해 내사하고, 수사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5]

2.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제2차 법안은 주로 대테러센터의 설립에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부분은 삭제·수정하였지만 대테러센터 부분은 이전 법안의 내용을 대체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정원은 이번 법안에서도 대테러센터의 설치·조직을 고집함으로써 애초 국정원이 목표로 했던 대테러조직의 설치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도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거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원 '개편'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법제하에서라면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정원 내의 기구축소 및 조정은 가능하다. 반면 대테러센터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면 국정원은 개편논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조직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5) 그밖에 지적할 부분도 있으나 그러한 지적이 테러방지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듯하여 더 이상 서술하지 않겠다. 또한 필자는 제1차 법안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서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아래에서 지적하겠다.

있다. 국정원 조직 개편(혹은 개혁)에 대한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테러센터와 같은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일종의 사전포석인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내의 대테러센터는 외국의 정보기관과 테러관련 정보협력(법 제4조 1항 5호),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제4조 1항 3호), 활동영역확대, 각종 정보업무에 대한 총괄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전의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 법안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도대체 대테러센터가 없다면 대테러업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 얼마만큼 답답한가?"

3.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다.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법(의회통제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에게 새로운 권한(테러예방, 제거에 관한 관리,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겠다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각국은 반테러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시스템 변경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국정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비록 부분적인 영역에서나마)로 운영되고 있으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건 안되건 상관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과거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일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행 국정원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할 시간에 국정원과 같은 비밀정보기관을 통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 팀부터 만들어야 한다.

4. 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해도 되는가?

과거 군은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 한해 민간인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했다.[6] 그런데 최근에는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것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국내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는 바로 그러한 상황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군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미 육군은 1993년 6월에 발간된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FM 100-5: Operations'에서 처음으로 전쟁이외의 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OOTW)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개념변화는 군사교리가 냉전 시대의 군으로부터 위기대응군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났다. 군대는 외부적 도발에 대처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문제들인 국가지원활동(군 가용병력의 지원 및 제공, 지역사회경제발전에 기여),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자연 및 인공재난으로 인한 위험제거 및 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마약유입차단활동, 대 테러작전 등의 평화유지활동에도 대처할

6) 물론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자체는 위헌·위법한 행위이었거나 적어도 탈법적인 것이라 보아야 한다. 위수령에 근거하여 군이 대학구내에 진입한다든지, 병사가 총기를 휴대하는 등 무장한 채 탈영했을 시 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안보와 국내평화증진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자들만이 적이 아니라, 난민, 국제마피아, 극우·극좌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들도 국가를 위협하는 적이므로 그들과 맞서기 위해 군을 투입해야 하며, 그들과 맞서는 문제는 더 이상 대내적 치안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안보문제로 된다는 주장이다.

전쟁 이외의 작전이라는 개념은 한국군내에도 보편화되어 있다. 육군은 「육군의 역할 및 중요성」이라는 글에서 "우리 육군은 그 동안 재해·재난구조활동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 결과 군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비군사적 위협 유형으로는 ① 테러 ② 정보체계 마비 ③ 국가적 치안질서 혼란 ④ 밀입국 ⑤ 국가재난 및 환경위기 ⑥ 국가이익 위협 상황이 있다."[7]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테러사태 시 군대를 국내 치안활동에 투입하는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국방법'을 개정하여 '테러사태'시 정부가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현재 대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고안한 장치였으나, 그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치적 반대자, 노동파업에도 군을 동원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치안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법 집행의 軍作戰化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군대는 법을 어기는 개개인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훈련받은 조직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가 포함된 집단 전체를 적으로 보고 그들을 섬멸하는 데 익숙한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나서게 될 경우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라. 현재는 "시설 보호 및 경비"(제12조)로 되어 있지만 이후 법개정으로 얼마든지 군대의 역할확대는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 보호 및 경비"라는 조항 자체만으로도 군대는 시민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번 테러방지법 비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비록 테러사태시라고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한국군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변경을 아무런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5.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편이냐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냐"(with us or with the terrorists) 하는 그 '유명한' 이분법을 제시하였고, 그런 단순논리를 실제 정책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물론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어떠한 것인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입법을 위한 정확한 자료와 요즘 정부가 좋아하는 로드맵(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비밀주의'로 진행하는 현재와 같은 법제정과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III. 테러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national security에서 human security로

7)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에서 인용함. 「새 천년 육군-육군의 실상-육군의 역할 및 중요성」, http://www.army.go.kr/saechun/sa-4/k3-1.htm.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national security에서 human security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2. 재난방지,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을' 그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 특별히 한국사회의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권사회단체간담회(2003.09.22.) 내부토론용]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

작성: 민변 장주영 변호사

1. 제정반대의 개괄적인 이유

가.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테러정보의 수집과 배포 등 순수 정보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비밀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직과 활동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른 행정부서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통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비밀조직의 속성상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비합법활동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업무와 방첩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그 정책의 집행, 그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보안사범에 대한 정보수집은 정보기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분담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그 정책을 집행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비밀스럽게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립하여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과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 테러의 예방·방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위 대책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정보수집을 위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는 지나친 권한 확대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테러정책을 수립하고 특수부대와 군까지 동원하여 대테러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불필요하고 중첩되는 기구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욱 전념하여야 한다. 일단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이나 진압은 기존의 정부조직에 의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관건은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입수하느냐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9·11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만 있었다면 그 테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의 진압과 대응조치는 기존의 정부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테러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나.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테러활동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재난대책기구를 통하면 된다.

(1)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위 회의 및 산하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하여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과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무처산하에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기구에 모두 국가정보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조치, 국가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미 테러를 포함한 국가안전관련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테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나 사무처산하 위기관리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내에 중복하여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은 테러혐의자 규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관리의 보호 및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을 정보기관이 주도하여 관계기관에 설치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행정부처를 지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 현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정부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행정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내 재난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정부는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하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지역긴급구조본부를 두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하거나 관할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테러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위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테러의 예방이나 구조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하므로 테러로 인한 피해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나 만약 테러의 개념이나 테러대응의 특수성이 위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재난·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재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며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경찰은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의 진압을 위하여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테러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청에서,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는 관세청에서, 항공기의 피납방지 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테러와 관련된 출입국관련업무는 법무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테러정보의 수집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각기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업무는 재난관리법(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에 충분히 들어 있어서 위 법에 따른 중앙안전대책위원회나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3) 테러방지법안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산하의 위기관리센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테러방지법상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을 주도할 경우 이들 기관의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테러대책기구가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해서 테러를 예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국정원(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개혁시도는 김영삼정부시절 북풍사건, 김대중정부시절 도청의혹과 각종 게이트연루 등으로 실패하였음이 밝혀졌다. 노무현정부는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열망을 도외시한 채 국정원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주도의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기관본연의 업무를 넘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법안내용 분석과 비판

가. 테러의 개념정의가 불가능하다.

우선 국제적으로 합의된 테러의 개념이 없어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법안에는 테러와 관련하여 9개의 협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일 경우 국내법으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국제협약은 항공기테러, 외교관 및 인질보호, 핵·폭탄테러, 해상테러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협약인데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이들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심각한 테러사건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국제협약을 빌미로 이들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정보기관이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법안에는 현재 9개의 국제협약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도 들어 있고 앞으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늘어난다면 이 법에 포함될 것인데 그럴 경우 국정원의 권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 특수부대의 출동요청과 군병력의 지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과 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의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

청할 수 있고 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미 대테러부대로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부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장의 판단으로 군과 경찰의 특수부대출동을 요청하도록 하여 사실상 그 부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규제 등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도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이 테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규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중복하여 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라. 상황전파

법안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통보받고 또 신속히 전파하는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산하의 위기관리센터가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마. 허위신고죄에 대한 수사권

허위임을 알면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죄에 대하여 데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존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는커녕 새로운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바. 금융정보제공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부칙 제2조) 그러나 대테러센터의 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제공한 테러관련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테러관련 수사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으면 되므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정원과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참석자 소개 (사회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
- 인사말 : 홍근수 목사
- 경과 보고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
- 발언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 성명서 낭독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회장

때 : 2003년 9월 30일 화요일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 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성명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1.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입법을 2001년 이후 일관되게 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의 권력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운운하지만, 그것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누누이 지적해 왔다.

2.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일견 문제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은 물론 그 밖의 '위기관리'에서 주도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조직이 경찰, 군대 및 기타 공개된 정부기구를 지휘하는 국가기구 운영에서의 본말전도가 발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밖에 군 병력을 대테러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 및 통신 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 역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3. 국가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대응을 위한 체제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숱하게 이야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해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 나아가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찰 및 통신 검열 논란 등을 볼 때, 당장 우리에게는 안보 유지 및 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현존 체제를 인권 기준에 맞도록 민주적

으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현실이다.

4.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면서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설 때 비로소 세계가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감시의 촉수를 강화하고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5. 어떤 식으로든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왜 이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2003년 9월 30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경과 보고>

2001년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12월 7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2002년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국회 정보위 심의 국회파행으로 무산
·3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공전으로 끝나)
·3월 19일: 김덕규 국회 정보위 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제정 불가피성 역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IMF·유엔안보리 결의안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4월 8일: 민주당, 대테러센터 권한 조정과 테러·테러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과 관철의사 밝혀
·4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국회 정보위 심의 연기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김덕규 의원실의 관계자는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돼, 회의를 열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미루기로 했다"고 말해
·5월 :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정보위의 강영소 수석전문위원은 "월드컵은 국제행사의 하나의 예시였을 뿐,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 입법의 취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안 통과의 여지를 남겼다. 또 김덕규 국회정보위원장실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월드컵 뒤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5월 31일 : 월드컵 개막.

2003년 (뒷장→)

·8월 18일 : 국회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 일간지 인터뷰에서 "심의를 중단해 온 테러방지법안을 새로 수정해, 올 정기 국회 안에 입법 처리하도록 추진 중" 밝혀
·9월 초 : 수정안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9월 초 ~ 국정원, 일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작업
·9월 18일 :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 중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9월 22일 :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다시 구성하고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막기로 결의.
·9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참여 단체는 아래 참조)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제목 :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및 의견 표명 요청
날짜 : 2003년 10월 1일(수) (총 4 쪽 : 별첨 포함)
별첨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1.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민주당과 국정원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근 결성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현재까지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3. 1차로 테러방지법안 입법 논의가 있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2001년 12월 7일),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공적인 논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2월 20일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에 표명해 이 법안에 대한 인권적 준거틀을 제시했습니다.

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께부터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정안 역시 기존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지도·조정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테러법 혹은 테러방지법이 이미 제정된 나라들에서 인권 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5.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소속 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안 입법 재추진과 관련 인권적 시각에서 공개적인 검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새로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6. 감사합니다. <끝>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참여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2003. 10. 14 현재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목 차

○ 의견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1 ~ 10

○ [별첨 1] 성명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11 ~ 12

○ [별첨 2] 국제앰네스티의 공개 성명 13 ~ 15

[의견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역행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1. 국정원개혁은 어디로 갔는가?

지난해 국정원의 도청과 정치사찰논란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 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약하였다. 이회창 후보도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정부 들어 국정원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테러정보의 수집업무만을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의욕적으로 추진기획단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그 동안 정치사찰역할을 해왔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해외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북한과 해외 간첩을 제외한 국내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내부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국정원은 대대적인 내부개편작업을 펼치면서 정치사찰을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정치사찰논란은 없어지지 않았고 수지 김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 전력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의 자체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둘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원의 체제를 제도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고 조직 축소나 인원 축소라는 미봉책으로 접근할 경우 언제든지 집권세력의 필요성과 국정원자체의 팽창논리, 정치권의 역학관계에 따라 탈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고 국내정치사찰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에는 여야 간에 의견이 거의 일치가 된 듯하다. 그 외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지탄받아온 보안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여 국정원을 정보수사기관이 아닌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가 국정원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폐지하여 정보기관이 국가정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여지를 없애며 보안업무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는 등 권한 남용의 근거를 정비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이 남용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상 비밀은 보장하되 권한을 분리하고 적절한 통제를 통해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개혁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국정원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여야 간에 국정원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혁작업은 전혀 성과가 없는 가운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대테러 업무를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한 것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넘는 것으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정보기관의 역할은 테러정보의 수집과 배포 등 순수 정보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직과 활동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른 행정부서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통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제한되어 있어 예산편성과 사용에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업무와 방첩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그 정책의 집행, 그와 관련된 행정권한의 행사는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그 정책을 집행에 옮기는 역할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권한

을 비밀스럽게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립하여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과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 테러의 예방·방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위 대책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 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정보수집을 위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는 지나친 권한 확대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테러정책을 수립하고 특수부대와 군까지 동원하여 대테러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에 국정원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씩 모여 길거리에서 공동 응원하는 가운데에서도 월드컵을 무사히 치른 바 있다. 결국 9·11 테러와 월드컵을 계기로 테러와 관련된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했던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고 그 불신은 지금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불필요하고 중첩되는 기구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욱 전념하여야 한다. 일단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이나 진압은 기존의 정부조직에 의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관건은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입수하느냐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9·11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만 있었다면 그 테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의 진압과 대응조치는 기존의 정부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

게 새로운 테러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대테러업무는 기존의 정부기구로도 충분하다.

가.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위 회의 및 산하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하여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과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무처 산하에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기구에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조치, 국가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미 테러를 포함한 국가안전관련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테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나 사무처산하 위기관리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내에 중복하여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은 테러혐의자 규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관리의 보호 및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을 정보기관이 주도하여 관계기관에 설치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행정부처를 지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현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정부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행정부처 장관들과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내 재난의 예방과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에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정부는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외공관과 교육청, 검역소, 지방환경·항공·철도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체, 원자력발전소 관리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구조활동의 지휘·통제를 위해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지역긴급구조본부를 두며 119구조대와 경찰,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긴급구조활동을 벌인다.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긴급구조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하거나 관할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테러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재난관리법 상 기구를 통해 테러의 예방이나 구조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하므로 테러로 인한 피해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만약 테러의 개념이나 테러대응의 특수성이 위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재난·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 외 경찰은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의 진압을 위하여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테러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청에서,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는 관세청에서, 항공기의 피납 방지 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테러와 관련된 출입국관련업무는 법무부

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테러정보의 수집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각기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분담 및 대응체계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테러에 대한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테러방지법안에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대테러활동을 지휘한다는 내용 외에 테러대응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대테러센터가 테러대응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테러방지법안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산하의 위기관리센터나 재난관리법상의 긴급구조상황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테러방지법상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을 주도할 경우 이들 기관의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정원은 대테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안은 중복되는 기구설치, 부실한 규정 등으로 오히려 테러대응체계의 중첩과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4. 국제협력과 무관한 테러방지법안

테러방지법안을 심사할 소관부처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안보리는 9·11 테러 직후의 결의안 제1373호 등을 통해 반테러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등)에 각국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고, 테러자금의 차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했지만, 시민의 자유권을 대폭 제한하는 '반테러법' 체제를 구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 정부는 9·11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보기관 및 형사소추기관의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2년 11

월, 제57차 유엔총회는 대테러조치로 인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한 결의는 각 국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에 반응하는 차원에서 취한 대테러조치들이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상황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테러 위협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위기에 처한 국제인권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법 원칙에 따른 대테러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매개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협력은 비밀정보기관간의 비밀스러운 정보교류강화의 형태가 아니라 외교, 경찰, 사법당국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강화로 실현되어야 한다.

5. 구체적인 법안내용과 비판

가. 테러의 개념정의가 불가능하다.

우선 국제적으로 합의된 테러의 개념이 없어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법안에는 테러와 관련하여 9개의 협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협약에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가 바로 테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일 경우 테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 그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나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의 시설 또는 그러한 공항에 소재하고 있는 취항 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공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가 단순 범죄인 지, 아니면 공항에서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테러행위가 되는 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합법적인 권원이 없는 핵물질의 수령, 소유, 사용에 의해 사망 또는 인명에 대한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에 대한 본질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핵물질의 절도 또는 강탈, 유용 또는 사취(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가 모두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도 불분명하다.

테러의 정의에 내국인 범죄나 외국인 범죄,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나 조직적·집단적 범죄사이의 구별도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후자의 행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 둘 사이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테러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9개의 국제협약에 규정된 범죄가 바로 테러방지법상의 테러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위 협약 상 범죄행위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일 경우 국내법으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국제협약은 항공기테러, 외교관 및 인질보호, 핵·폭탄테러, 해상테러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협약인데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이 이들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해왔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심각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국제협약을 빌미로 이들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정보기관이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법안에는 현재 9개의 국제협약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도 들어 있고 앞으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늘어난다면 이 법에 포함될 것인데 그럴 경우 국정원의 권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 특수부대의 출동요청과 군 병력의 지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군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의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대책회의 의장은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미 대테러부대로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부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테러센터장의 판단으로 군과 경찰의 특수부대출동을 요청하도록 하여 사실상 그 부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규제 등

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도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법 제11조) 또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으며(법 제29조)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다.(법 제46조) 출입국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 제47조)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55조, 60조)

따라서 국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이 테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규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중복하여 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라. 상황전파

법안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속히 통보받고 또 신속히 전파하는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산하의 위기관리센터나 중앙긴급구조본부내의 긴급구조상황실이 처리하면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다.

마. 허위신고죄에 대한 수사권

허위임을 알면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죄에 대하여 데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기존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는커녕 새로운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바. 테러에 대한 감청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대상에 테러행위를 포함시킬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의 통신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테러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 의해 통신제한조치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사. 금융정보제공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부칙 제2조 제1항) 그러나 대테러센터의 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제공한 테러관련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테러관련 수사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으면 되므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금융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테러반지법 제장 반대 국민행동 연락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741-5363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날 짜 2003. 10. 24 . (총 1 쪽)

보 도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꿔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수차 요구되었던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에 힘을 쓰고 본연의 역할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철저한 쇄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2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0월 30일
수신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님 귀하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총98개단체 ,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테러방지법안 공청회에 관한 건
매수 : 총 2 쪽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참여연대 양영미 02-723-4250, yang@pspd.org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에서 2003년 11월 3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의 소속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와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에게도 공청회 참가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요식 절차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귀 정보위원회에서 잡으신 공청회의 일정이 너무 시일 상 촉박하며, 현재의 공청회 토론자를 볼 때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토론할 민간 쪽 참가자의 수가 동수가 아니어서 균형 잡힌 공청회가 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4. 이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귀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의 날짜를 늦춰주실 것과 △공청회의 민간 토론자 중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동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원래의 취지에 맞는 보다 내실있고 균형 잡힌 공청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5. 이에 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1. 귀하의 서신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청회 개최일자 연기 문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관심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테러방지법안에대한수정안 역시 지난 8월 중에 마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이미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를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청회 개최일정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현시점에서의 공청회 개최일자 변경은 고려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찬성과 반대 진술자수의 불균형 문제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진술인은 찬·반 입장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한 6인으로 균등하게 선정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면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 진술인을 민간단체 관계자만으로 선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는 시정·개선을 요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안건의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의 본래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3.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03. 10. 30.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김덕규

수신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연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참여연대 양영미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3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총98개 단체 ,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테러방지법안 국회 공청회(11월 3일) 보도 요청**
매수 : 총 2 쪽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참여연대 양영미 02-723-4250, yang@pspd.org
별첨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의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1. 안녕하십니까?

2. **11월 3일 월요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립니다.**

3. 국가정보원은 2001년, 2002년에 이어, 2003년 다시금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대한변협,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가 단체, 국제기구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3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엽니다. 98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법 제정을 위한 요식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충분한 시일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청회에 임해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설득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점, '테러방지'를 빌미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권한이 강화되고 감청 대상이 확대되고 군대가 국내 치안에 동원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강화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고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 등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교수, 이황호 교수가 공청회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귀 언론사에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취재 보도해,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안이 갖는 위험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국가보안법도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정원 산하에 두게 돼 있는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체계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에 의해 설치된 국정원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으며 차라리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서 떼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대해선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방부 역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 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가 뒤흔들리는 숨막히는 미래를 불러올 것이다. 유독 정부부처들 중 국정원만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집착하는 현재의 상황은 테러방지법안이 곧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한번 국정원에 고한다. 테러방지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공청회장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날치기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국정원을 대변하는 기관인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끝>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짜 : 2003년 11월 13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출입기자
발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98개 단체 , 참가단체는 아래 참조)
제목 : **<항의 행동>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
3당이 연합으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매수 : 총 3 쪽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별첨 :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나온 각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및 언론기고문을 파일로 별첨합니다.
오늘 11월 13일 발표될 성명은 아침 11시 경 배포할 예정입니다.

10일 : 3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공동 발의
13일 아침 11시 경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중단하는 것만이 길이다" 성명 발표.
13일 낮 12시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 항의 방문, 성명 전달
이후 국회 앞 항의 집회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11월 10일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조차도 지난 11월 3일 국회 정보위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 입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강력한 항의 의사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할 것입니다.

3. 이번 3당 연합 수정안 역시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다른 행정부처들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을 유지·강화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제한 사유에 '테러'를 추가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권한이 확대되는 한편, '테러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사찰 및 출입국 규제가 더욱 강화될 소지가 큰 점 역시 그대로입니다.
나아가 이번 수정안은 수정 이유에서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위협'이라고 명기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더욱 위험합니다. 이밖에도 동원된 군 부대가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하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 이미 우리 사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 그리고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를 조장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안을 졸속 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은 13일 목요일 낮 12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성명 :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중단하는 것만이 길이다>를 전달하는 등의 항의 행동을 전개하고, 테러방지법안 심의 중단을 다시금 촉구할 것입니다.

6. 귀 언론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취재·보도해,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안이 갖는 위험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

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성명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 11. 13]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수정안도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조항은 끝끝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도 여전하다. 테러방지법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차제에 봉쇄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민간치안 영역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문제 또한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들을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 그리고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존의 법 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을 왜 강행하려고 하는가? 법무부조차도 지난 11월 3일 국회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숱하게 지적했지만, 수정안에 제대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도리어 이번 수정안은 수정 이유에서 아예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 법안의 추진 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며, 오히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개 정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은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매일 끊이지 않는 정치비리와 싸움질로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들이 테러방지법안 제정에는 의기투합을 하는 그 뒷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둘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민주적으로 감독·통제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국가정보원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라고 정보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진정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원이라면 '테러방지법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위협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들을 정녕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집착하는 국가정보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1월 13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성명 및 언론의 기고문

(2003. 10. 31 ~ 11. 13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를 즉각 집어치워라 !
- 반인권적 3당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집요한 집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정부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몇차례의 수정과 수정을 거듭했지만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의 권한강화 내용은 변함이 없는채 그 모양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함께 합작해서 내놓은 수정안은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권고에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예봉을 분산시킨채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정원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여러 차례 문제를 야기한 권한남용을 중단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개혁하겠다고 공헌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자신들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적 청사진조차 내놓지 못한 채 또다시 이런 반인권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테러의 위협을 빙자한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적 현실인식을 외면한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앞장서서 테러위협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며 몇가지 인권침해 부분만 수정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춤을 추고 있는 꼴은 가히 가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감히 공헌한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국 역설적이게도 테러를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반인권적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무엇인지 국정원과 국회가 보다 진지한 접근을 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에 역행해서 역사적 퇴행을 조장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강행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2일
다산인권센터

테러방지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

국가정보원이 작년 국민적인 반대여론 속에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슬람테러가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테러방지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파병결정을 함으로써 아랍인 전체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제 그 잘못 결정에 의해 테러위협이 높아질 것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테러의 원인제공을 해놓고 테러방지를 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논리인 것이다. 테러방지를 하겠다면 국정원과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파병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 높았던 국정원에 어떻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정원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음모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도 테러로 덧씌워 사찰, 감시,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의 테러'를 대비한 테러방지법은 특정 사상과 특정 집단 혹은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의 소수자를 억압하는 기제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얼마전 국정원에서 귀화한 파키스탄인에게 정보원 노릇을 요구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는 테러방지법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의 기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과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막아내고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민주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03년 11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회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입법이 국회와 국정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는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인권침해를 정당화하여 나아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 재추진의 주요이유가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위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권 출신은 테러용의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며, 일상적인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테러를 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속출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예상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국정원이 귀화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에게 이슬람사원에 모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국정원은 무슬림 노동자에게 국정원 노릇을 요구하는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권 노동자들을 테러용의자로 간주하고 있음도 여실히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더욱 빈번히 일어날 것이며, 또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평화집회에 동참해왔다. 그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파병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테러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라크에 한국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더욱이 이슬람권의 한국에 대한 테러가 진정으로 위협이 된다면, 이라크 병력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테러를 막는 첫 번째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와 국정원은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테러방지법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진정으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이라크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11월 12일

대전포럼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참가자 일동

안산외국인쉼터, 안산안디옥 국제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여성해방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갈릴래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미리암 이주여성상담소, 한국 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모임, 천안외국인교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전북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안양전진상복지관, 아름다운재단,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 집, 게르방, 국제이주기구 (무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T.763-2606 F.745-5604 E-mail : minka21@hanmail.net

테러방지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3일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은 공청회 내내 귀를 기울이며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심각한 오류들을 접하고 나서 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99개의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9월 30일). 또한 국제앰네스티(Ammesty International)가 외국인의 권리 침해가능성과 13조 처벌조항에 관한 문제점을 들어 공개적인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10월 10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10월 22일).

이렇듯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은 국내·외에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공청회에 참석한 귀 4인 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2002년 입법 추진된 법안에 비춰 많이 개선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안 심사 관련한 4인 협의회의 시각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선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지만 테러방지법안에 기술된 테러개념 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9개 국제협약에 근거해 테러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9개 국제협약을 국내법제에서 어떻게 흡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이는 너무 모호한 개념설정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테러활동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서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경찰 특공대, 대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 항공국 등 각 부처 고르게 역할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부 정책을 국가정보원의 지휘 조정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은 참으로 근거가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정말로 테러를 걱정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사회에서 예상가능한 테러 행태들을 연구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테러 관련 정보수집에 전념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법에 규정된 수사권을 반납하고 전문정보기구로서 거듭나는 노력을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현재의 국정원 권한에 더해 국가조직을 국정원 지휘감독 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군대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테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천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인권유린, 정치공작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5공시절부터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경찰, 검찰, 행자부, 문교부 등 정부 각 부처를 망라해 지휘하면서 수많은 공안사건들을 조작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구속했던 실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문피해자,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의 원한과 고통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행적을 반성하고 권한을 줄이기는커녕 대테러 활동을 지휘 조정 감독한다는 이름으로 정부 각 부처를 국정원의 권한 행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법안 심사 관련한 4인 협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에 입각해 이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갈파하고 폐기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기부 시절 인권피해자 가족들로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비밀정보기구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집중된 점을 주시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악법 제정을 논의하는 국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별히 테러방지법안 심사 관련하여 구성된 귀 협의회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3년 11월 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즉각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본질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테러집단들과 평화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허구적인 구도로 국제사회가 재편되었음을 천명하는 계기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사회에서도 국민적 불안감을 등에 업고 테러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대국민 감시체계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라며 졸속입법하려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사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조차도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의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 제정이 무산된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테러단체와 테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말살하고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특수부대, 군 병력 동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의 음모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제정의 본질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법 제정 무산 이후 정부는 재입법 추진을 위한 명분과 시기 모색에 전전긍긍해오다가 이라크 파병과 맞물려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참여정부의 국정원 강화에의 참여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해진 데는, 행자부 등의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조항의 수정 등의 과정상의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이 내포하고 있는 법적 정의를 초과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여지와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확대, 즉 가히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를만한 위험성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등의 저항에 부딪힌 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보기관으로의 권한 축소라는 개혁의지를 천명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의 복권을 테러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국정개혁은 커녕 각종 비리와 무능의 극치를 보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불만에 직면한 노무현 정부가 민중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과 폭력의 세계화로의 동참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세와 맞물리는 대목이다.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상시적 대국민감시체계 구축하려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의 명분으로 이슬람 테러의 위협을 들고 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미군과 다국적군, 주재 공관 등에 대한 자살테러, 납치 사건 등이 벌어지고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위시로 한 침략동맹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며, 그 책임은 바로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몫인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무차별 폭력테러에 대항해야 한다며 전세계 국민을 선동하는 미국에 발맞추어 한국군 파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이용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 역시 침략과 점령을 위한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며 이라크 국민을 비롯한 평화를 옹호하는 전세계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한 장본인일 따름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 음모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것은 테러 대책의 수립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대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일 뿐이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테러 예방이라는 것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미국을 위시로 한 폭력의 세계화와 착취와 점령의 대한 민중들의 저항을 완전 말살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신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정당한 민중들의 표현과 행동의 권리를 말살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단호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03년 11월 12일 사회진보연대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아시아지역노동조합연대회의에 참가한, 홍콩,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의 우리 노동조합들은 한국의 지배 엘리트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을 믿지는 않지만, 테러방지법안은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노동조합활동의 지도자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어 인권의 기준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2003. 11. 11.

서명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노동조합(SBJ) 사무총장 Tonyo
인도네시아 노동정보정책센터(LIPS) Iman Rahman
필리핀 5.1절운동(KMU) 위워낭 Elmer Labog
필리핀 교원노조위원장 Antonio L. Tiono
태국 민주노조연맹(DTUA) 위원장 Mongkol Somkrabuan
태국 철도노조(SER/SRCT) 위원장 Somsak Kosaisuk
남반구노조연대(SIGTUR) 2004′ 코디네이터 Arokia Dass
남반구노조연대(SIGTUR) 코디네이터 Rob Lambert
인도 전인도노동조합회의(AITUC) 사무총장 H. Mahadevan
인도 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A K Padmanabhan

To the Honorable
Members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e, The Trade Unionists participating at the Asian Regional Trade Union Solidarity Conference from the following countries;
Hong Kong, India, Thailand, Philippines, Indonesia, Australia, South Africa, Malaysia and Norway, note with very serious concern the move of the Korean ruling elite to introduce the Terrorism Prevention Bill in Parliament.

We do not believe in terrorism, but with regret we note that the Bill gives a wide coverage to the denial of the norms of Human Rights that can be used against the leadership of legitimate open and public Trade Union activities.

We demand the withdrawal of the Bill and to cease all hostilities with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2003. 11. 1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정보원은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정보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조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긴급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온 터에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제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이 도입한 테러방지법이 정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수사 기관이 국민의 전화와 인터넷을 감청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곧 다양한 전자 감시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는 것이었고,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월 3일 국가정보원은 "국내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 거주지역에 국제 테러분자 침투 예방을 위해 국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보활동"이었다고 반론을 펼쳤다.

단지 이슬람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일상적인 감시를 하려 하는 것이(이미 실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국정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통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국정원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라는 비밀정보기관이 갖는 위험성을 다시금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을 도청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국정원의 감시의 촉수에 걸려든 셈이다. 이것이 과연 '테러방지', '해외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할 때, 개인들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 체제는 더욱 우리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뻗쳐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혈안이 되어 입법을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 분명하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계엄 상황이 아

닌데도 평상시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 또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은 정보활동을 무한정 확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집중되는 정보는 정보기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마련이다. 정보기관은 비밀성과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항상적인 위협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정원은 충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금도 '테러 우려'를 빌미로 개인들에 대해 광범한 사찰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은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키울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가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발벗고 나서라!

2003년 11월 11일

인권운동사랑방

<유가협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반인권, 위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2002년, 국정원은 월드컵 개최와 함께 테러에 대처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나섰으나 인권, 사회 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가인권위조차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회는 또 다시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법안제안 이유로 이슬람테러의 확산위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완전

히 전도된 것이다. 테러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당장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면 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내용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 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 높았던 국정원에 어떻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정원이 국내 문제 개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정원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음모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도 테러로 덧씌워 사찰, 감시, 통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되며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국정원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반인권적 행태에 반대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3년 11월 8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갖는 인권 침해적 성격은 지금까지 누차 지적되어 왔던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악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한국동성애자연합은 깊은 분노를 표한다. 파병으로 인해 고조되는 테러 위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시간에, 추가_파병 결정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차별과 폭력의 집약인 전쟁을 반대하는 데 힘을 쏟을 일이다.

현재 제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무한대의 정보를 사찰,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소위 '비상'시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을 입법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잊고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 어떤 기준으로 '국가 시설을 위협하는 집단'을 규정한단 말인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정상성의 규범을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들을 자의적으로 국가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안정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권침해와 폭력과 차별을 제거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는 못할망정, 반인권적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으니 암담하다.

작금의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지켜보며 한국동성애자연합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테러'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만약의 전쟁'을 빌미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악몽을 또 한번 되풀이해야만 하는가. 한국동성애자연합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수위를 높이려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결단코 반대한다.

2003년 11월 8일
한국동성애자연합

[성명] 야만적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테러법까지 만든단 말인가?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 16대 국회가 올해 안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9.11테러 이후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제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개선도 아닌 개악한 안을 들고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작심이다.

이들의 명분이란 것이 '파병으로 인한 테러 대상국 포함 또는 북의 상시적 테러위험에 대한 대처 필요' 등을 이유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반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서는 것은 전신인 안기부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들고 반통일독재정권에 기생하며, 통일운동가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애국적 인사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가두었으며, 우리의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는가?
반성은커녕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테러방지법까지 만들어 두 악법을 들고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겠단 말인가?

○ '북의 상시적 테러위험' 이란 명분 또한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발상이자, 반민족적 작태다.
중앙정보부에 이어, 안기부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북이 쳐들어온다며, 대북 적대행위를 일삼고,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반민족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다. 또한 반통일정권의 군사독재의 권력유지에 악용해 왔다. 6.15공동선언 발표로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화해협력의 시대에 동족을 적이라고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또 제2의 국가보안법이나 다름없는 테러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냉전적 발상이다.

○ 스스로 재앙을 만들지 말아야 하다.
법을 만들면 된다는 편의적 발상을 접고 파병으로 테러를 받을 행위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테러 대상국이란 것 자체가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낙인찍은 것이지 조작된 것이지 증명된 것이 없다. 또 테러위험도 미국의 파병압력에 굴복해 침략전쟁에 동조해서 생길 위험이다. 파병결정을 내린 뒤 서울 시내 곳곳에서 테러에 대처한다며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는 모습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16대 국회가 폐지하라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범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테러방지법안까지 만든다면 16대 국회는 그야말로 반시대적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16대 국회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을 마지막 임무로 삼으라!

우리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정원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 정보위는 헌법을 유린하는 테러방지법을 입안 시도를 중단하라!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11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안국동 瘋>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가 답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 변호사) 2003-11-05

주의깊은 독자라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란 것을 제정하려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저항과 공동행동이 있었고, 당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반인권,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그때 우리는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의 탄생은 막을 수 있었다.

그후 월드컵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무사히 치러졌고, 촛불시위와 대통령선거를 통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2003년 11월,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정원은 기존 법안의 몇 개 조항을 일부 수정한 후 연내입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전방위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 법안의 핵심은 테러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대테러센터'는 테러정보의 수집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테러센터 설립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인권침해와 간첩조작으로 악명높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각종 게이트 개입으로 '제버릇 남 못주었던'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가. 그 개념조차 불분명한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또 얼마나 많은 악행이 발생할지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

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일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해외정보처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이회창 후보도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정부 들어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테러정보의 수집업무만을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그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개혁은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원 개혁방향은 명확하다. 정보기관이 가져서는 안되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내정치사찰의 근거가 되어왔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관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회계특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시급한 개혁과제는 외면한 채 왜 난데없이 테러방지법을 들먹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이야 생존논리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여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 임무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국정원법과 예산회계특례법 등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국정원에서는 법안제안이유로 이슬람테러의 확산위험을 들고 있다. 한국군의 추가파병방침에 따라 이라크와 이슬람세계에서의 반한감정이 높아지고, 다국적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로 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과 한국 기업인이 이라크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논리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테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파병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국민들까지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CNN과 USA 투데이가 지난달말 실시한 설문결과, '이라크전쟁이 정당했다"는 응답은 4월의 71%에서 52%로 크게 줄었다.
반면 "군사개입이 불필요했다"는 응답은 25%에서 46%로 급증했다. 미국의 어느 석학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미국인들은 '정글없는 베트남'을 보기 시작했다.

테러에 대한 대처는 테러발생원인에 대한 사려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히 강제력에 의해 테러를 진압하는 미국식 방식은 절대로 테러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라크에서 본격적으로 반미게릴라전이 시작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에도 자해폭탄테러와 보복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테러방지를 위해 인류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문명간 이해를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국의 침략적 행동은 더 큰 테러를 발생시킨다. 아니 미국의 행동 자체가 거대한 테러이다. 우리 국회와 정부, 특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로써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추가파병방침을 철회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행위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중단시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파병철회'가 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켜야겠다면, 이 법을 통해 막고 싶은 테러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테러의 예로 설명한다면 이럴 것이다. "테러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실제로는 석유에너지와 세계패권을 위해 벌이는 전쟁을 말한다. 본질은 침략전쟁이면서 겉으로는 자유를 위한 전쟁이나 해방전쟁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 국정원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정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된 법으로 2001년 이미 한 차례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제정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적된 반인권적 요소들을 상당히 수정했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다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되었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문제가 되는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 설치 등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있으며 그 모양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가장 확실한 테러방지 대책은 파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테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며, 국정원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 강화를 위함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국정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여러 차례 문제를 야기한 국내 사찰업무 등 권한 남용을 중단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정원의 행보는 테러방지법을 기반으로 과거 안기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범국민위원회는 국정원과 일부 수구 국회의원이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수많은 국민과 사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없이 또다시 이런 반인권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은 국정원과 테러방지법을 발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조금이라고 충실하고자 한다면, 과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등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범국민위원회는 국정원과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반인권적 행태에 반대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3년 11월 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해동 · 이이화 · 김영훈

[성명]

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가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 위험 고조를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미 국정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순수 정보기관을 상급 정보수사기관으로 만들고, 비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며, 난민을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해 입국조차 못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